

보수규정

제정 : 1992. 7. 7.	제1차개정 : 1992. 12. 31.
제2차개정 : 1993. 7. 20.	제3차개정 : 1994. 7. 18.
제4차개정 : 1994. 12. 14.	제5차개정 : 1995. 8. 29.
제6차개정 : 1995. 9. 16.	제7차개정 : 1996. 2. 9.
제8차개정 : 1996. 5. 16.	제9차개정 : 1997. 6. 1.
제10차개정 : 1997. 12. 9.	제11차개정 : 1999. 1. 19.
제12차개정 : 2000. 11. 21.	제13차개정 : 2001. 12. 14.
제14차개정 : 2002. 4. 25.	제15차개정 : 2002. 12. 18.
제16차개정 : 2003. 12. 31.	제17차개정 : 2004. 4. 29.
제18차개정 : 2004. 12. 20.	제19차개정 : 2005. 12. 26.
제20차개정 : 2006. 6. 8.	제21차개정 : 2006. 12. 18.
제22차개정 : 2007. 4. 12.	제23차개정 : 2007. 12. 14.
제24차개정 : 2008. 12. 17.	제25차개정 : 2009. 3. 27.
제26차개정 : 2009. 9. 1.	제27차개정 : 2010. 7. 1.
제28차개정 : 2011. 4. 22.	제29차개정 : 2012. 10. 29.
제30차개정 : 2013. 12. 13.	제31차개정 : 2014. 3. 26.
제32차개정 : 2014. 7. 30.	제33차개정 : 2014. 12. 11.
제34차개정 : 2015. 8. 31.	제35차개정 : 2016. 4. 27.
제36차개정 : 2016. 12. 28.	제37차개정 : 2017. 10. 19.
제38차개정 : 2018. 11. 30.	제39차개정 : 2021. 6. 18.
제40차개정 : 2021. 12. 10.	제41차개정 : 2022. 6. 17.
제42차개정 : 2023. 11. 15.	제43차개정 : 2024. 4.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정기상여금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생활보장급성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직무연봉”이라 함은 담당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국내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및 자녀수당을 말하며, 국외직원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국외근무수당 및 자녀수당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집단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평가급 및 경평성과급의 합계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의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7. “일할계산”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월할계산”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그 기간의 달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국내직원”이라 함은 본사 및 국내지사(사무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국외직원”이라 함은 국외지사(1인 지사·주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11. “정기상여금”이라 함은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제1절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3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수의 계산) ① 통상임금은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달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는 제외한다.
 - 가. 「인사관리규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경우
 - 나. 「인사관리규정」 제75조에 따라 면직된 경우
2. 「인사관리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경우

② 보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요강에 따른 휴가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 및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제 17조를 준용하여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제5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달 21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근무한 날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및 전염성 B형 간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업무와 관계없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② 업무유관 학위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의 사유로 청원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및 연수자에 대하여는 인사명령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한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퇴직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말미암아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를 받은 자의 보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기발령 등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1. 「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 제62조 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대기발령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다만,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유에 따른 대기발령 : 「보수규정 시행요강」(이하 “요강”이라 함)에서 정함

②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추진역 직위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제11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급액과 처분전 당시의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지급액과 처분전 당시의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2. 징계심의중임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심의 결과 징계처분요구가 인사위원회에서 기각된 경우

제12조(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운영요강」에 따른다.

제2절 기본연봉

제13조(기본급) ① 일반직원 1,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에서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일반직원 1,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경우, 개인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인상률을 누적식으로 차등하며 최고-최저등급간 차등폭은 4%p로 한다.

③ 제2항의 차등시 차등 등급 수는 6개,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특정 등급 인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하며 등급별 인원 배분비율 등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④ 일반직원 3급(부서장급 제외),4,5급, 사무직원, 별정직원의 기본급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4조(지급시기) 기본급은 지급일 당시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분할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직무연봉

제15조(직무연봉) 직무가치 평가, 직무의 신설 등에 따른 조정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직무연봉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4절 수당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를 한 국내직원(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7조(연차수당)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퇴직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8조(국외근무수당) 국외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근무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국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8조의2(자녀수당)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자녀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5절 정기상여금

제19조(정기상여금) ① 정기상여금은 지급월 말일 재직하는 일반직원 3급(부서장

급 제외),4,5급, 사무직원 및 별정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월 말일 기준 휴직자, 정직자는 제외하며,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월 말일에 재직중이 아니거나 징계 및 「유연근무제 시행요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제 등의 사유로 기지급된 정기상여금의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보수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한다.

제20조(징계를 받은 자의 정기상여금)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10조에 준한다.

제6절 성과연봉

제21조(내부평가급 지급대상) ① 내부평가급은 지급월 말일 재직하는 일반직원 1,2급 및 3급(부서장급)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월 말일 기준 휴직자, 정직자는 제외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월 말일에 재직중이 아니거나 징계 및 「유연근무제 시행요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제 등의 사유로 기지급된 내부평가급의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보수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한다.

제22조(내부평가급 지급) ① 일반직원 1,2급 및 3급(부서장급)의 내부평가급은 개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부평가급은 평가결과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제23조(내부평가급 지급 기준 및 시기) 내부평가급은 직무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달 분할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과전자의 내부평가급)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및 연수자에 대하여는 인사명령 내용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겸직시의 내부평가급) 직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한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징계를 받은 자의 내부평가급)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급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제10조에 준한다.

제27조(경평성과급) ① 경평성과급은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규정」에서 정하는 연간성과 평가기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연간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경평성과급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경평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다음 연도의 경평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성과연봉 비중 등) ① 일반직원 1,2급 및 3급(부서장급)의 내부평가급과 경평성과급을 합한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비중 계산시 경평성과급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각 직급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7절 연봉의 운영

제29조(연봉계약) ① 연봉은 매년초에 전자매체로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갈음하고 별도계약은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연봉결정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사담당본부장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봉 결정에 관한 사장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연봉의 결정방법) ①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집단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적용시 직급의 구분은 매년 1월 급여일 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시기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직무연봉은 직무가치, 중요도 등을 반영한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④ 집단 및 개인 성과평가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 1.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 2. 평가 결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 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요강에서 정한다.

제31조(비밀유지) 직원은 자신의 연봉을 타 직원에게 누설하거나, 타 직원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보칙

제32조(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의 보수) 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에서 정한다.

제33조(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보수) 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에서 정한다.

제34조(수습사원의 보수)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및 요강에서 정한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3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요강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199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별표 1 내지 4 및 7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기준급여 또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예외로 한다.

부칙(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책임자수당)를 적용한다.
- ④(경과조치)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과 퇴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지급대상 및 기준)를 적용한다.
- ⑤(다른 규정의 폐지) 별정직원보수복지규정 및 국외보수복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4)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6항의 규정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6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주 6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격수당관련 별표 5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6년도에는 보수규정 20차 개정분의 별표7에 12배한 자

격수당 적용)

부칙(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3)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2,3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5)

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본부장 직무직능급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6)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국외직원 기본연봉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7)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9)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0)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1)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제30차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부칙(32)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3)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4년 발생소득에 한해 제32차 보수규정 제18조를 적용한다.

부칙(3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5)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는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규정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른 기본급은 이 규정 시행전 기본급과 차등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38)

이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9)

이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6조 제4항에 따른 보수지급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휴직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41)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3)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